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877호 2024. 2. 29.(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4-29호 삼천포, 무한즐거움 '팔포팔락 업타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고시------1

○ 사천시 고시 제2024-30호 사천 대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5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4-280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8
- 사천시 공고 제2024-290호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9
- 사천시 공고 제2024-296호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 사천시 공고 제2024-315호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46
- 사천시 공고 제2024-319호 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53

회					
람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76 / FAX 831-6012

제877호

사천시 고시 제2024-29호

삼천포, 무한즐거움 '팔포팔락 업타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에 따라 『삼천포, 무한즐거움'팔포팔락 업타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사 천 시 장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개요

가. 사 업 명: 삼천포, 무한즐거움 '팔포팔락 업타운'

나. 사업유형: 지역특화재생

다. 위치/면적: 사천시 선구동, 동서금동 일원 / 576,000㎡

라. 사업기간: 2024년 ~ 2027년(4년간)

마. 총사업비: 401.04억(미중물 250억,지자체 134억,부처연계 16억,공기업 0.21억,민간투자 0.83억)

바. 활성화계획도



제877호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가. 계획의 비전과 목표

- 비 전: "팔포에서 즐기는 무한 즐거움, 팔포팔락"

- 목 표: 모두의 삼천포에서 나만의 팔포를 만들어가는 지역특화재생

나. 세부 사업계획

									비(억	원)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합계		도시재		보조 지방비		자체		연계	공기	기금	민간	사업 기간
					소계	국비		도비	시비	지방비	폭미	지방 비	업	, ,		., _
		총 합계 합 계(A+B+C)				150.00 150.00				134.00	8.00	8.00	0.21	_	0.83	
	Α.	계				117.13			0 1 1 1 1	_	_	_	_	_	-	
	복 합 문 화 체험	A1. 팔포팔락 플랫폼 조성사업		193.42	193.42	117.13	76.29	15.62	60.67	-	-	-	-	-	-	'24-
	집객 공간 조성	팔포팔락 플랫폼 조성 (3층, 2,941㎡)	H/W	193.42	193.42	117.13	76.29	15.62	60.67	_	_	_	_	_	_	'26
		계 R1 광포광색 상권가로 정비사업		53.41 34.52	52.58 34.37	31.55 20.62				_ _	_	_	_	_	$0.83 \\ 0.15$	
		① 중앙시장 활성화(야간조명 설치 480m)	H/W	2.61	2.61	1.57	1.04		0.84	_	_	_	-	_	-	
마중물 사업	B. 상권 활성	② 팔포음식특화지구 보행공간 조성 (바닥포장 2,384㎡, 노후간판정비 30개소)	H/W	9.57	9.42	5.65	3.77	0.76	3.01	_	-	_	-	-	0.15	'24- '26
	화 특화거 리 정비	③ 환경수용적 가로환경 개선 (투수성 포장, 식생수로 등)	H/W	21.30	21.30	12.78	8.52	1.70	6.82	_	-	_	-	_	-	20
		① 관광객 안전강화길 조성 (안심부스, 안내판 등)	H/W	1.04	1.04	0.62	0.42	0.09	0.33	_	-	-	-	_	-	
		B2. 팔포팔색 특화골목 조성 사업 특화골목 조성&집수리 사업(55호)	H/W	18.89 18.89	18.21	10.93 10.93	7.28		5.83	_ _	-	-	-	_ _	0.68 0.68	1
	C. 사업관리	지 전관리지원 기계		4.00	4.00	1.32	2.68	0.18	$\frac{2.50}{2.50}$	_	_	_	-	_ _	-	- '24-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S/W	2.20	2.20	1.32	0.88	0.18	0.70	_	-	-	-	-	-	24-
	지원	성과모니터링 합계	S/W	1.80	1.80	_	1.80	_	1.80	12.00	_	_	_	_	_	21
		A1-1. 팔포팔락 프로그램 지원사업	S/W	1.30	-	_	_	_	_	1.30	-	-	-	-	-	'24· '27
નો નો ગો	마중물	B1-1. 팔포상권 브랜딩 활성화	S/W	3.60	_	-	_	_	_	3.60	-	_	_	_	_	'25·
지자체 사업	지원	B1-2. 팔포팔락 주민협정	S/W	1.60	_	_	_	_	_	1.60	-	-	-	_	-	'24· '27
	프로그램	B2-1. 특화골목조성 지원 프로그램	S/W	0.70	-	-	_	_	_	0.70	-	_	_	-	_	'24· '27
		C1-1. 거버넌스 운영 및 마을 유지관리	S/W	4.80	_	_	_	_	_	4.80	-	-	_	_	-	'24·
		합 계	사천	122.00	_	_	_	_	_	122.00	_	_	_	_	_	'21·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 사천	7.00	_	_	_	_	_	7.00	-	_	-		-	'24 '23
지자체 연계사업		l과 목섬을 잇는 무지개교 건립공사 	시 사천	45.00	_	_	_	_	_	45.00	-	-	-		-	'25 '22
	③ 팔포음스	③ 팔포음식특화지구 마리나항 조성사업		60.00	_	_	-	-	-	60.00	_	_	-	-	-	'29
	④ 실비문회) 실비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차 계			_	_	_	-	-	10.00		-	-	-	-	'23- '24
부처 연계사업		합계 지역관광개발사업)박재삼 문학의 거리 조		16.00 16.00	_	_	-	_	_	_		8.00		_	_	'23-
	성사업	합계	부	0.21	_	_	_	_	_	_	_	_	0.21	_	-	'26
공기업	LH (수선유			0.21	_	_	_	_	_	_	-		0.21		_	'23- '24

※ 향후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천 시 공 보

제877호

し	ł. 연차별투자계획												
						사업	비(백	만원)					
구분	단위사업		계	도시재생 (마충		자체 지방비	민간		,	사업기긴	:		
				국비	지방비	^178 [□] 1		기투입	2024	2025	2026	2027	
	총합계		40,104.3	15,000.0	10,000.0	1,200.0	83.3	4,712.0	9,584.0	8,995.0	9,894.8	6,835.2	
	합계 (A+B+C+D)		26,283.3	15,000.0	10,000.0	1,200.0	83.3	1,500.0	7,875.0	7,995.0	7,994.8	835.2	
	A. 복합문화체험 집객 공간 조성		19,342.0	11,713.2	7,628.8	_	_	1,300.0	6,014.0	6,014.0	6,014.0	_	
	A1. 팔포팔락 플랫폼 조성사업	H/W	19,342.0	11,605.2	7,736.8	_	-	1,300.0	6,014.0	6,014.0	6,014.0	_	
마중	B.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정비		5,341.3	3,154.8	2,103.2	_	83.3	-	1,601.0	1,601.0	1,600.8	455.2	
무 물 사업	B1. 팔포팔색 상권가로 정비사업	H/W	3,452.0	2,062.2	1,374.8	-	15.0	_	1,145.7	1,145.7	1,145.6	_	
가다	B2. 팔포팔색 특화골목 조성사업	11/ //	1,889.3	1,092.6	728.4	-	68.3	_	455.3	455.3	455.2	455.2	
	C. 사업관리지원		400.0	132.0	268.0	_	_	200.0	50.0	50.0	50.0	50.0	
	C1. 사업관리지원	H/W	400.0	132.0	268.0	_	_	200.0	50.0	50.0	50.0	50.0	
	D. 지자체 사업		1,200.0	_	_	1,200.0	_	_	210.0	330.0	330.0	330.0	
	A1-1. 팔포팔락프로그램 지원사업	S/W	130.0	_	-	130.0	_	_	32.5	32.5	32.5	32.5	
지자	B1-1. 팔포상권 브랜딩 활성화	S/W	360.0	-	-	360.0	_	_	-	120.0	120.0	120.0	
체 사업	B1-2. 팔포팔락 주민협정	S/W	160.0	-	_	160.0	-	-	40.0	40.0	40.0	40.0	
	B2-1. 특화골목조성 지원 프로그램	S/W	70.0	-	_	70.0	ı	I	17.5	17.5	17.5	17.5	
	C1-1. 거버넌스 운영 및 마을 유지관리	S/W	480.0	_	-	480.0	_	_	120.0	120.0	120.0	120.0	
	E. 지자체 연계사업		12,200.0	-	-	-	-	1,600.0	1,700.0	1,000.0	1,900.0	6,000.0	
지자	E1. 통창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H/W	700.0	-	_	_	-	600.0	100.0	-	-	_	
체 연계	E2. 노산공원과목섬을 잇는 무지개교 건 립공사	H/W	4,500.0	_	_	_	_	500.0	1,000.0	1,000.0	1,000.0	1,000.0	
사업	E3. 팔포음식특화지구 마리나항 조성 사업	H/W	6,000.0	_	-	_	_	_	100.0	-	900.0	5,000.0	
	E4. 실비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H/W	1,000.0	_	-	_	ı	500.0	500.0	I	_	_	
24.20	F. 부처연계사업		1,600.0	_	_	-	ı	1,600.0	I	I	_	_	
부처 연계 사업	F1. (문체부)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박재삼 문학의 거리 조성사업	H/W	1,600.0	1	-	_	1	1,600.0	-	_	_		
공기	G. 공기업		21.0	_	_	_	_	12.0	9.0	_	_		
업	G1. 수선유지급여사업(LH)	H/W	21.0	_	_	_	_	12.0	9.0	_	_		

제877호

პ.	노시재생활성화계왹	서뉴	열담	

가. 열람기간 : 2024.02.29 ~ 2024.03.29.(공고일로부터 30일간)

나. 열람장소 : 사천시청 도시재생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천시 도시재생과(055-831-31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77호

사천시 고시 제2024-30호

사천 대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2012.9.13.)로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되고, 사천시고시 제2014-31호(2014.3.27.), 제2014-85호(2014.6.19.), 제2015-76호(2015.6.25.), 제2016-4호(2016.1.14.), 제2016-267호(2016.12.29.), 제2017-126호(2017.7.13.), 제2017-251호(2017.12.21.), 제2018-262호(2018.12.27.), 제2019-294호(2019.12.26.), 제2021-387호(2021.12.22.), 제2022-281호(2022.12.22.)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한 사천 대동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사 천 시 장

- □ 사천 대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사천 대동일반산업단지
-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서부경남의 교통 요충지인 사천시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창출 및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제877호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43-28번지 일원

나. 면 적: 102,469 m²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2012. 9. 11. ~ 2024. 6. 30.

(변경) 2012. 9. 11. ~ 2024. 12. 31.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변경)

○ (기정)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변경)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가. 사업시행자 : (기정) (주)대동정비 대표이사 양태관

(변경) (주)신흥 대표이사 강웅

나. 주 소 : (기정)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로 154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150 (상평동)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가. 지목별 현황

구 분	합 계	전	답	구	대	임	도
필지수	37	14	9	3	4	4	3
면 적(m²)	102,469	16,672	13,122	2,477	15,264	53,633	1,301
구성비(%)	100.0	16.3	12.8	2.4	14.9	52.3	1.3

나. 소유자별 현황

7. H	تا ا		국유지		x] ◊ ¬]
구 분	계	소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사유지
필지수	37	7	6	1	30
면 적(m²)	102,469	3,992	3,903	89	98,477
구성비(%)	100.0	3.9	3.8	0.1	96.1

제877호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m²)		그 서비(%)	비고
丁 亡	기정	증감	변경	구성비(%)	u) <u>т</u>
합 계	102,469	-	102,469	100.0	
산업시설용지	70,890	-	70,890	69.2	
공공시설용지	31,579	-	31,579	30.8	
도 로	12,693	감) 3,203	9,490	9.3	
주 차 장	1,650	-	1,650	1.6	
유 수 지	1,810	-	1,810	1.8	저류지
공 원	1,560	증) 3,203	4,763	4.6	소공원
녹 지	13,866	-	13,866	13.5	완충녹지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가) 도로 총괄표(변경)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	-별	합계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²)
합계	기정	3	631	12,693	2	384	8,579	1	247	4,114	-	-	-
엽게	변경	3	435	9,490	2	384	8,579	1	51	911			
スコ	기정	2	594	12,149	1	347	8,035	1	247	4,114	-	,	-
중로	변경	2	398	8,946	1	347	8,035	1	51	911			
소	:로	1	37	544	1	37	544	-	-	-	-	-	-

나) 도로 결정 조서(변경)

		규	모			اد لم			v) A	7 .	.a. a.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1	42	20 ~26	집산 도로	1,072 (347)	지방도 1002호선	사천시경계	일반 도로	축동산단 대동산단	사천시 고시 제2012-152호 (2012.9.13.)	
기정	중로	2	53	15	집산 도로	247	중로1-42	중로2-50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변경	중로	2	53	15	집산 도로	51	중로1-42	사다리 산43-28번지	일반 도로	_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소로	1	76	10	국지 도로	37	중로1-42	사다리 116-1번지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제877호

2)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기 정	면 적(m²)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30	주차장	사다리 133-11번지	1,650	-	1,65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3) 공원 결정 조서(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기 정	면 적(m²)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변경	45	대 동 소공원	소공원	사다리 산43-28번지	1,560	증) 3,203	4,763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4)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m²))	최 초	비고
丁七	번 호	기결병	종 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미끄
기정	53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33-1번지	2,100	-	2,10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54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산43-28번지	890	-	89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55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20번지	2,270	-	2,27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56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33-16번지	6,267	-	6,267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57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18-1번지	2,339	-	2,339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5) 유수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기 정	면 적(m²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0	대 동 유수지	저류시설	사다리 131번지	1,810	-	1,81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6) 상수도 공급계획(변경)

구 분	용수수요량(m³/일)		- 비고		
丁 七	기정	변경	H 1/2		
합 계	254	251.7	계획용수량 기정 : 254m³/일		
공업용수	226	215.5	변경 : 251.7㎡/일		
생활용수	28	36.2	(축동일반산업단지 배수시설 사용)		

제877호

7) 오 · 폐수 처리계획(변경)

구 분	오·폐수	량(m³/일)	- 비고		
7 正	기정	변경			
합계	45	38.6	계획오 · 폐수량 기정 : 45㎡/일		
산업폐수	20	4.9	변경 : 38.6 m³/일		
생활오수	25	31.9	(축동일반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사용)		

8) 에너지 및 통신공급계획(변경)

가) 전력

구 분	전력소요예싱	·량(천kw/일)	ਸੀ ਹ	
	기정	변경	HI 77	
계	3.83	3.07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나) 통신

구 부	수요링	-(회선)	ਮੀ ਹ
丁七	기정	변경	비끄
계	37	77	(주)KT와 협의하여 공급

9.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자금조달 : 사업시행자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 기 정

투자내역	용지 매입비	산업단지 인허가 용역비	보상비	산업단지 조성 공사비	산업단지 조성 용역비	각종 부담금	사무비	합 계
합계	8,400,694	300,000	1,056,846	5,770,000	500,000	206,007	196,453	16,430,000
2009	ı	-	-	_	_	-	-	-
2010	-	_	_	_	_	_	_	_
2011	-	_	_	_	_	_	_	_
2012	-	300,000	_	_	_	_	_	300,000
2013	5,920,000	-	-	-	-	-	-	5,920,000
2014	-	-	300,000	_	400,000	60,000	40,000	800,000
2015	_	-	-	217,000	-	60,000	40,000	317,000
2016	1,250,000	-	-	2,000,000	-	60,000	50,838	3,350,838
2017	_	-	-	553,000	50,000	6,007	25,615	634,622
2018	1,126,362	_	756,846	1,000,000	10,000	10,000	10,000	2,918,208
2019	104,332	-	-	500,000	10,000	10,000	10,000	634,332
2020	_	-	-	1,000,000	20,000	5,000	10,000	1,030,000
2021	_	-	_	_	_	_	_	-
2022	1	-	-	_	-	-	-	-
2023	_	-	_	_	_	_	_	-
2024.6				500,000	10,000	5,000	10,000	525,000

제877호

■ 변 경

(단위:천원)

투자내역	용지 매입비	산업단지 인허가 용역비	보상비	산업단지 조성 공사비	산업단지 조성 용역비	각종 부담금	사무비	합 계
합 계	8,400,694	300,000	1,056,846	6,900,443	500,000	206,007	196,453	17,560,443
2009	1	-	_	_	_	_	1	_
2010	ı	_	-	ı	_	-	ı	-
2011	ı	_	_	-	_	-	ı	_
2012	ı	300,000	_	1	_	_	ı	300,000
2013	5,920,000	-	_	-	_	_	ı	5,920,000
2014	1	-	300,000	-	400,000	60,000	40,000	800,000
2015	1	_	_	217,000	_	60,000	40,000	317,000
2016	1,250,000	-	_	2,000,000	_	50,000	50,838	3,350,838
2017	ı	_	_	553,000	50,000	6,007	25,615	634,622
2018	1,126,362	-	756,846	1,000,000	10,000	10,000	10,000	2,913,208
2019	104,332	_	_	500,000	10,000	10,000	10,000	634,332
2020	1	_	_	1,000,000	20,000	5,000	10,000	1,035,000
2021	ı	-	-		-	-	-	
2022	ı	-	_		_	_		_
2023	-	-	-		_	_		
2024	ı	-	-	1,630,443	10,000	5,000	10,000	1,655,443

○재원조달계획은 투자자금으로 84억과 금융권 대출자금(PF) 91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임

(단위:천원)

투지	나 내역	자기자본	금융권 대출자금(PF)	합 계
첫 게	기정	8,430,000	8,000,000	16,430,000
합 계	변경	8,430,000	9,130,443	17,560,443
20	009	-	1	-
20	010	-	-	-
20	011	-	-	-
20	012	300,000	1	300,000
20	013	5,920,000	1	5,920,000
20	014	800,000	1	800,000
20	015	317,000	-	317,000
20	016	950,838	2,400,000	3,350,838
20	017	34,622	600,000	634,622
20	018	18,208	2,900,000	2,918,208
20	019	34,332	600,000	634,332
20	020	30,000	1,000,000	1,030,000
20	021	_	-	_
2022		_	_	-
2023		_		
기정	2024.6	25,000	500,000	525,000
변경	2024	25,000	1,630,443	1,655,443

제877호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 붙임

11.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브	업	종	마 경(2)	그 서비(이)	
十 七	기정	변경	면 적(m²)	구성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70,890	100.0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가. 토지(변경)

구 분	면 조	덕(m²)	그 서 비 (%)	관리처	관리처분계획	
一 正	기정	변경	구성비(%)	기정	변경	
합 계	102,469	102,469	100.0	-	-	
산업시설용지	70,890	70,890	69.2	사업시행자 귀속	사업시행자 귀속	
공공시설용지	16,153	12,950	12.7	-	-	
도로(중로1-42)	8,035	8,035	7.9	사천시 무상귀속	사천시 무상귀속	
_{주)} 중로(중로2-53)	4,114	911	0.9	사천시 무상귀속	사업시행자 귀속	
도로(소로1-76)	544	544	0.5	사천시 무상귀속	사천시 무상귀속	
_{주)} 유수지⑩	1,810	1,810	1.8		사업시행자 귀속	
주차장⑩	1,650	1,650	1.6	사업시행자 귀속	사업시행자 귀속	
녹지용지	15,426	18,629	18.1	_	-	
주) 소공원④	1,560	4,763	4.6	사업시행자 귀속	사업시행자 귀속	
완충녹지⑤	2,100	2,100	2.0	사천시 무상귀속	사천시 무상귀속	
완충녹지%	890	890	0.9	사천시 무상귀속	사천시 무상귀속	
완충녹지⑤	2,270	2,270	2.2	사천시 무상귀속	사천시 무상귀속	
완충녹지(6)	6,267	6,267	6.1	사천시 무상귀속	사천시 무상귀속	
완충녹지(57)	2,339	2,339	2.3	사천시 무상귀속	사천시 무상귀속	

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에 의거 단일기업이 입주하여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귀속 하지 않음

사 천 시 궁 보

제877호

나. 시설물(변경)

■ 기 정

	구 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계획
		B=20~26m	L=347m	
도 로 (각종포장포함)	7 74 40	가로수(이팝나무)	69주	무상귀속
	중로1-42	교통표지판(각종)	교통표지판(각종) 12개소	
		투광기(H=8.0m)	4개소	
		B=15m	L=247m	
	중로2-53	가로수(이팝나무)	51주	무상귀속
		교통표지판(각종)	8개소	
	소로1-76	B=10m	L=37m	무상귀속
	T 対 ネコ	р_0 г	L=1,236m	무상귀속
	L형 측구	B=0.5m	L=203m	사업시행자 귀속
	철근콘크리트 수로관	800B	L=79.0m	무상귀속
	우 수 관	Ø300~1350mm	L=1,119.6m	무상귀속
		0.7*0.7*1.0	1.0개소	사업시행자 귀속
		0.9*0.9*1.5	3.0개소	무상귀속
	집 수 정	1.5*1.5*1.6	2.0개소	무상귀속
		1.5*1.5*1.6	1.0개소	사업시행자 귀속
우 수		1.5*1.5*2.0	1.0개소	무상귀속
	우수받이	0.3*0.4	59.0개소	무상귀속
	우수맨홀	사각특2호	15.0개소	무상귀속
	十十 世 宣	사각특4호	5.0개소	무상귀속
	도수로	0.5*0.35	L=25.0m	무상귀속
	7 / E	0.5 0.55	L=42.0m	사업시행자 귀속
	ВОХ	1.2*1.0	8.5m	사업시행자 귀속
	U형개거	1.2*1.0	L=4.5m	사업시행자 귀속
		1.5*1.0	L=37.1m	무상귀속
	오 수 관	Ø75~250mm	L=460.0m	무상귀속
오 수	오수맨홀	원형1호	6.0개소	무상귀속
	가압맨홀	2.0x2.0x3.5	1개소	무상귀속
	상수관로	Ø80mm	L=489.0m	무상귀속
상 수		∅50~75mm	L=18.0m	무상귀속
	소화전	지상식	1.0개소	무상귀속
구 조 물	전석	H=0.5~3.5m	414.5m	무상귀속
전 기	가로등	H=10.0m	14.0개소	무상귀속
저 류 지	저류시설	1식	1.0개소	사업시행자 귀속
공 원	공원시설	1식	1.0개소	사업시행자 귀속
녹지공간	수 목	스트로브잣나무	1,419.0주	무상귀속

^ 1 천 시 공 보

제877호

■ 변 경

구 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계획
		B=20~26m	L=347m	
	スコ1 40	가로수(이팝나무)	69주	ㅁ기키스
도 로	중로1-42	교통표지판(각종)	12개소	무상귀속
		투광기(H=8.0m)	4개소	
(각종포장포함)		B=15m	L=51m	
	중로2-53	가로수(이팝나무)	18주	사업시행자 귀속
		교통표지판(각종)	6개소	
	소로1-76	B=10m	L=37m	무상귀속
	L형 측구	B=0.5m	L=1,236m	무상귀속
	L% =1	D-0.3III	L=396m	사업시행자 귀속
	ショコココロトコ	400C	L=1,540.0m	사업시행자 귀속
	철근콘크리트수로 관	600C	L=265.0m	사업시행자 귀속
	Ľ	800B	L=79.0m	무상귀속
	우 수 관	Ø300~1350mm	L=1,119.6m	무상귀속
	十十七	Ø300~450mm	L=151.1m	사업시행자 귀속
		0.7*0.7*1.0	10.0개소	사업시행자 귀속
		0.9*0.9*1.5	4.0개소	무상귀속
	집 수 정	1.5*1.5*1.6	2.0개소	무상귀속
우 수		1.5*1.5*1.6	2.0개소	사업시행자 귀속
		1.5*1.5*2.0	1.0개소	무상귀속
	우수받이	0.3*0.4	59.0개소	무상귀속
		0.3*0.4	9.0개소	사업시행자 귀속
		사각특2호	15.0개소	무상귀속
	우수맨홀	사각특2호	3.0개소	사업시행자 귀속
		사각특4호	5.0개소	무상귀속
	도수로	0.5*0.35	L=25.0m	무상귀속
	·		L=42.0m	사업시행자 귀속
	BOX	1.2*1.0	8.5m	사업시행자 귀속
	U형개거	1.2*1.0	L=4.5m	사업시행자 귀속
		1.5*1.0	L=35.1m	무상귀속
	오 수 관	Ø75~250mm	L=422m	무상귀속
오 수	오수맨홀	원형1호	5.0개소	무상귀속
	가압맨홀	2.0x2.0x3.5	2개소	무상귀속
상 수	상수관로	Ø 80mm	L=609.0m	무상귀속
,	소화전	지상식	1.0개소	무상귀속
구 조 물	전석	H=0.5~3.5m	286.2 m²	무상귀속
,	27	H=0.5~3.5m	1,279.0 m²	사업시행자 귀속
전 기	가로등	H=10.0m	7.0개소	무상귀속
·	•		2.0개소	사업시행자 귀속
저 류 지	저류시설	1식	1.0개소	사업시행자 귀속
공 원	공원시설	1식	1.0개소	사업시행자 귀속
녹지공간	수 목	반송 등	605주	무상귀속

제877호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변경)

-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브		면 적(m²)	구성비	धो न	
一	기 정	변 경	변경후	(%)	비끄
합 계	102,469	-	102,469	100.0	-
일반공업지역	102,469	_	102,469	100.0	-

-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구역명	위 치		면 적(m²)		비고
丁正	번 호	7 7 7	7 1	기 정	변 경	변경후	미꼬
기정	-	대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43-28번지 일원	102,469	-	102,469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도로 결정 조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7.11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	별	합계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됩계	(m)	(m²)	그건무	(m)	(m²)	그건무	(m)	(m²)	工也十	(m)	(m³)
합계	기정	3	631	12,693	2	384	8,579	1	247	4,114	-	-	-
업계	변경	3	435	9,490	2	384	8,579	1	51	911	-	-	-
スコ	기정	2	594	12,149	1	347	8,035	1	247	4,114	_	-	-
중로	변경	2	398	8,946	1	347	8,035	1	51	911	-	-	-
소	로	1	37	544	1	37	544	_	_	_	_	-	_

■ 도로 결정 조서(변경)

		규	모			어기			2) Ó	주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1	42	20 ~26	집산 도로	1,072 (347)	지방도 1002호선	사천시경계	일반 도로	축동산단 대동산단	사천시 고시 제2012-152호 (2012.9.13.)	
기정	중로	2	53	15	집산 도로	247	중로1-42	중로2-50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변경	중로	2	53	15	집산 도로	51	중로1-42	사다리 산43-28번지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소로	1	76	10	국지 도로	37	중로1-42	사다리 116-1번지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제877호

나)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기 정	면 적(m²)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30	주차장	사다리 133-11번지	1,650	-	1,65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다) 공원 결정 조서(변경)

구 분	도면표시	공원명	시설의	위 치		면 적(m²)		최 초	目 つ
구 분	번 호	중천명	종 류	1 1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변경	45	대 동 소공원	소공원	사다리 산43-28번지	1,560	증) 3,203	4,763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라)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7. H	도면표시	ग्रसम	시설의	(م) خ		면 적(m²))	최 초	비고
구 분	번 호	시설명	종 류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53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33-1번지	2,100	-	2,10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54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산43-28번지	890	-	89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55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20번지	2,270	-	2,27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56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33-16번지	6,267	-	6,267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57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18-1번지	2,339	-	2,339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마) 유수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브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m²))	최 초	비고
구 분	번 호	시설명	종 류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기정	10	대 동	저류시설	사다리 131번지	1,810	-	1,81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제877호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도면	Hl 중	가구	면 조	(m²)	획 지			
그긴	민오	기기 번호	긴 ~	i(III <i>)</i>	위 치	면 전	(m²)	비 고
기정	변경	건모	기정	변경	71 /1	기정	변경	
I -1	I -1	т	70,890	70,890	축동면 사다리 산43-28번지 일원	44,160	70,890	산업시설용지
I -2	1 -1	1	70,090	70,090	축동면 사다리 산43-28번지 일원	26,730	70,090	산업시설용지
Ⅱ-1	Ⅱ -1				축동면 사다리 133-11번지 일원	12,693	9,490	도 로
Ⅱ-2	Ⅱ-2		16,153	12,950	축동면 사다리 133-11번지 일원	1,650	1,650	주차장⑩
Ⅱ-3	Ⅱ-3				축동면 사다리 131번지 일원	1,810	1,810	유수지①
Ⅲ-1	Ⅲ-1				축동면 사다리 산43-28번지 일원	1,560	4,763	소공원45
Ⅲ-2	Ⅲ-2				축동면 사다리 133-1번지 일원	2,100	2,100	완충녹지⑤
Ⅲ-3	Ⅲ-3] т	1E 406	10 (20	축동면 사다리 산43-28번지 일원	890	890	완충녹지钖
Ⅲ-4	Ⅲ-4] Ш	15,426	18,629	축동면 사다리 120번지 일원	2,270	2,270	완충녹지⑤
Ⅲ-5	Ⅲ-5				축동면 사다리 113-16번지 일원	6,267	6,267	완충녹지(56)
Ⅲ-6	Ш-6				축동면 사다리 118-1번지 일원	2,339	2,339	완충녹지⑰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도면	번호	0) =1		¬ н		게 취기 ()
기정	변경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도	지정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용도	권장	기정	● 한국표준산업분류(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용도	변경	● 한국표준산업분류(C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에 용도
I -1	Т 1	사다리		건폐율		● 70%이하
I -2	I -1	산43-28 번지		용적률		● 350%이하
		빈시		높 이		●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	건축선		-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유수지 등)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및 관련법규에 의해 건축이 가능함으로 별도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ス	어요소	적용구간	제어내용	비고
		중로1-42호선과 중로2-53호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71	차량출입	교차지점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구간내 차량 진·출입불허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
기 정	불허구간	중로2-53호선과 중로2-50호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채·건축선에 관한
/8	돌이기신	교차지점으로부터 최소	구간내 차량 진·출입불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35m이내	1 전에 사장 전 출입할어	참조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
변	차량출입	중로1-42호선과 중로2-53호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
경	불허구간	교차지점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구간내 차량 진·출입불허	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제877호

대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 작성되는 대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형태와 공간활동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의 적용범위)

○ 본 지침은 대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구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지침적용의 구성)

○ 본 지침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과 제2장은 산업시설용지, 제3장 기타사항, 제4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은 모든 건축용지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제4조(지침적용의 기본원칙)

- ① 본 지침은 사전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관련법규 및 사천시 관련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② 본 지침 내용 중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제5조(용어의 정리)

-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 2.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부 건축물 연면적(동일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제877호

- 3.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 4. "불허용도"라 함은 관련법규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는 허용되지 않은 건축용 도를 말하며, 허용용도와 불허용도가 중복될 경우 불허용도가 우선적으로 적용 된다.
- 5.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되어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 6.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 7.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 8.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의 의장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색깔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 ② 본 지침에서의 층수의 산정은 건축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 ③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산업시설용지

제6조(건축물의 용도) (변경)

○ 산업시설용지에서의 용도규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규 제 내 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
		기정	에 의한 공장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	허용		제조업(C30) 및 부대시설
시설	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
용지		변경	에 의한 공장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고무 및 플라스틱제
			품 제조업(C22) 및 부대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7조(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최고층수
건폐율	최저층수

350	-
70	-

제877호

② 산업시설용지의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350% 이하로 적용한다.

제8조(건축물의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계통의 밝은색 계통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가지	• 제한없음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제9조(차량의 대지 내 진·출입)

- ①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도의 대지 내의 주차통 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 ③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주차장)

- 산업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다.
- 주차단위구획시 법정 주차대수의 5% 이상은 대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할 것을 권장함

제11조(장애인을 위한 계획)

○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 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익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과 사천시 관련조례를 적 용한다.

제3장 기타사항

제12조(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①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하며, 가능한 지주형 간판에 집약설치를 유도한다.
- ② 세로형 간판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877호

-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 2. 1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 ③ 둘출간판 및 옥상간판은 가로의 미관을 고려하여 불허한다.
- ④ 기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사천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기타)

- ①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중 기성제품은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 ②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옥외광고물은 사용할 수 없으나 부득이 본 지침과 상이하게 적용할 경우 사천시와 협의 후 적용하도록 한다.

제4장 지구단위계획 지침운용에 관한 사항

제14조(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구역 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건축과 조성 행위에 적용된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 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 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 본 시행지침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877호

다. 도시관리계획(조성계획) 결정 조서(변경)

1) 공원 결정 조서(변경)

	도면표시	고이버	시설의	위 치		면 적(m²)		최 초	비고
丁七	수 분 번 호	호 공원명 종 류	7 7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변경	45	대 동 소공원	소공원	사다리 산43-28번지	1,560	증)3,203	4,763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2) 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총괄표

_	ı H		면	적 (m²)		비고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변경후	
공유	원면적	1,560.0	증)	3,203.0	4,763.0	
시설	면적계	250.0	증) 339.0		589.0	기정 시설율 : 16.03% 변경 시설율 : 12.37%
건축면적	바닥면적	-			-	
신독변식	연면적	-		-	-	

나)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 (m²)		- 비 고
丁 ゼ	기 정	변 경	변경후	П 1/
총 계	1,560.0	증) 3,203.0	4,763.0	
도로 및 광장	250.0	증) 339.0	589.0	
녹 지	1,310.0	증) 2,864.0	4,174.0	

다) 세부시설조서

■ 도로 및 광장

구 분	도면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m²)	건축규.	모(m²)	규 모	비고	
丁七	^{1 판} 번호		T A	구시인적(Ⅲ <i>)</i>	바닥면적	연면적	규모	□ <u> </u>	
기정	1	보행자도로 사다리 산43-28번지		250.0	-	-	-		
변경	1	도로	사다리 산43-28번지	589.0	-	-	-	명칭 정정	
기정		소 >	계	250.0	-	-	-		
변경		소 7	계	589.0	-	-	-		

^1 천 시 공 보

제877호

■ 녹지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명 위 치		건축규모(m²) 바닥면적 연면적		규 모	비고
기정	2	녹지	사다리 산43-28번지	1,310.0	-	-	-	
변경	2	녹지	사다리 산38-28번지	4,174.0	_	_	_	
기정		소 >	계	1,310.0	-	-	-	
변경		소 <i>?</i>	계	4,174.0	-	_	_	

도로조서 총괄표

7.	분	합계		대 로		중	로	소 로	
	亡	연장(m)	면적(m²)	연장(m)	면적(m²)	연장(m)	면적(m²)	연장(m)	면적(m²)
합계	기정	83.1	249.0	-	-	-	-	83.1	249.0
압계	변경	279.2	589.0	-	-	-	-	279.2	589.0
0.2	기정	83.1	249.0	-	-	-	-	83.1	249.0
3류	변경	279.2	589.0	-	-	-	-	279.2	589.0

■ 세부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사용형태	연장(m)	면적(m²)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합	계		-	83.1	249.0			
변경		합	계		_	279.2	589.0			
기정	소로	3	1	2.0	진입로	83.1	249.0	남측구역계	주차장	
변경	소로	3	1	2.0	진입로	83.1	253.0	남측구역계	주차장	
신설	소로	3	2	1.5	연결로	15.2	23.0	소로3-1	소로3-3	
신설	소로	3	3	1.5	산책로	159.6	281.0	소로3-4	소로3-4	·
신설	소로	3	4	1.5	진입로	21.3	32.0	북측구역계	소로3-3	

제877호

15. 지정(개발계획) 구역계 좌표조서(변경없음)

번호	X좌표	Y좌표	번호	X좌표	Y좌표
1	179908.8580	116650.5500	34	180172.6380	116860.4770
2	179910.6730	116655.7690	35	180175.8480	116857.5590
3	179915.5750	116669.8710	36	180202.0340	116850.2630
4	179918.7680	116676.5220	37	180218.2540	116841.0480
5	179921.6630	116682.5530	38	180222.6010	116839.6800
6	179923.3080	116688.5740	39	180228.5290	116831.6100
7	179928.0690	116698.8100	40	180223.1020	116813.1820
8	179930.9330	116704.9690	41	180219.9720	116807.7620
9	179944.7900	116721.0510	42	180251.2140	116781.0130
10	179953.9490	116736.9290	43	180260.7370	116774.5090
11	179956.0520	116740.2180	44	180277.3030	116751.6450
12	179982.6840	116770.9170	45	180281.3810	116741.2820
13	179999.1870	116806.2870	46	180283.5570	116737.3060
14	180009.0750	116823.6820	47	180283.3240	116724.4580
15	180022.1360	116849.1580	48	180292.5260	116719.0990
16	180027.3710	116859.3690	49	180281.7710	116692.3420
17	180038.3040	116873.6770	50	180281.6910	116681.8050
18	180039.5830	116875.3510	51	180103.6357	116455.3376
19	180039.8940	116877.2370	52	180011.9490	116531.8850
20	180042.9470	116877.4870	53	179946.8260	116586.2540
21	180045.5040	116881.8350	54	179946.3530	116586.6490
22	180054.1220	116888.1420	55	179936.3890	116595.0680
23	180066.2710	116898.6070	56	179932.0360	116597.9450
24	180082.0590	116913.4170	57	179927.8910	116599.8430
25	180088.5730	116916.3800	58	179927.8310	116600.9040
26	180093.2050	116906.6320	59	179926.9260	116600.2850
27	180111.1520	116902.2930	60	179914.3390	116607.0810
28	180118.9230	116904.6730	61	179913.6156	116622.9939
29	180131.5090	118899.3340			
30	180135.0790	116897.4480			
31	180144.7620	116888.4710			
32	180145.8810	116884.5780			
33	180157.2340	116874.4820			

1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사천시청(투자유치산단과)에 두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도서 게재생략) 끝.

<붙임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 토지조서

				면 :	적(m²)	소	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목 적	비고
	Ť.	<u></u> 計계		102,469	102,469				·		
	축동면	,		102,107	102,107		경상남도 진주시 상	조사하기 취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1	사다리	산26-26	임	14	14	주식회사대동정비	대동 33-121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1
	호드러						71111 7 7 7 1 1	조기원이 되니		근저당권설정	
2	축동면 사다리	산26-27	임	102	102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 대동 33-121	구식의사 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1
	축동면						,, 0		시물특별시 중기 물시도 33 (물시도17月(전투시점)	시 8 편 현 78	
3	사다리	산26-28	구	655	655	국토교통부					
	축동면						경상남도 진주시 상	주신회사 하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4	사다리	산26-30	도	714	714	주식회사대동정비	대동 33-121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5	축동면	산43-28	임	53,309	53,309	양장훈	잠원로 117, 102동		시울특별시 중기 물시도 33 (물시도1/1)(선무시점	근시 8 년 2 8	
	사다리				,		3204호(잠원동, 아크 로리버뷰신반포)	.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6	축동면	산43-30	임	208	208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사다리	E 10 00	п	200	200	1 1 1 - 1 1 1 1 0 0 1 1	대동 33-121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1
	1								20022277702000	근저당권설정	
7	축동면 사다리	산43-31	구	1,733	1,733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 대동 33-121	구식회사 하나 은행	. ,,, ,		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8	축동면 사다리	115-7	답	214	214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 대동 33-121	주식회사 하나 은행		근저당권설정	-
	71-1-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9	축동면 사다리	116-1	답	705	705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 대동 33-121	주식회사 하나 은행		근저당권설정	-
	744						पा ठ 35-12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10	축동면	116-2	답	1,061	1,061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			근저당권설정	
	사다리			·			대동 33-121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11	축동면	117	답	218	218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사다리						대동 33-121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12	축동면	118-1	답	3,036	3,036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사다리	110 1		0,000	0,000	1 11 1 11 0 0 1	대동 33-121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13	축동면	118-4	도	83	83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	주식회사 하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15	사다리	110-4			0.5	1 74/19/00/1	대동 33-121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14	축동면	120-1	도	504	504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	주식회사 하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14	사다리	120-1	7	304	304	무극취사네공%비	대동 33-121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15	축동면 사다리	120	대	5,178	5,178	양태관	잠원로 117, 102동 3204호(잠원동, 아크				-
	71-1-4						로리버뷰신반포)	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16	축동면 사다리	121-1	대	3,792	3,792	양태관	잠원로 117, 102동 3204호(잠원동, 아크		(E/1217)(E-1718)	L/10020	-
	사나다						3204오(삼천중, 아크 로리버뷰신반포)	- 근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17	축동면	123-1	대	110	110	양태관	잠원로 117, 102동	주식회사 하나	기·호투받시 3기 교사도 30 (교사도I/I)(신부사섬)	는 시당편설정	-
]	사다리		"	-10		0 11 2	3204호(잠원동, 아크 로리버뷰신반포)	.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えにロ							スルカル コ・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18	축동면 사다리	124	전	502	502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 대동 33-121	구식의사 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1
							경상남도 진주시			VI.0 G E.0	
10	축동면	121	답	1.077	1.077	스타리 코	평거동 191-1,	주식회사 하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19	사다리	131	됩	1,977	1,977	양태관	들말흥한타운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110동 503호				
	축동면		_,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91-1,	주식회사 하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20	사다리	132	전	998	998	양태관	들말흥한타운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1
							110동 503호		기원기원기 이 기원시수 W (원시포기)(선무시점)	710 E E 78	
	축동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7, 102동	주식회사 하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21	사다리	133-1	답	2,506	2,506	양태관	3204호(잠원동, 아크			기사긔서기	1
							로리버뷰신반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 토지조서(계속)

				면 ?	적(m²)	소	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목 적	비고										
22	축동면 사다리	133-2	답	2,820	2,820	양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7, 102동 3204호(잠원동, 아크 로리버뷰신반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日	_,	_,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23	축동면	133-3	전	628	628	양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7, 102동 3204호(잠원동, 아크 로리버뷰신반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사다리	100 0			020	0 - 11 1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24	축동면	100.4	7.1	F02	F02	스타네 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7, 102동	주식회사 하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24	사다리	133-4	전	592	592	양태관	3204호(잠원동, 아크 로리버뷰신반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25	축동면		71	170	4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7, 102동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										
25	사다리	133-5	전	473	473	양태관	3204호(잠원동, 아크 로리버뷰신반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축동면		7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7, 102동	주신회사 하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										
26	사다리	133-6	전	820	820	양태관	3204호(잠원동, 아크 로리버뷰신반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27	축동면 사다리		귦	저	전	7-1	393	393	양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7, 102동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393	393	장대전	3204호(잠원동, 아크 로리버뷰신반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20	축동면		8 전	207	387	양태관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91-1, 들말흥한타운 110동 503호	주식회사 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28	사다리			38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축동면	122.0	3-9 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7, 102동 주식회	주식회사 하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										
29	사다리	133-9		신	선	선	929	929	양태관	3204호(잠원동, 아크 로리버뷰신반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축동면	1 100 10	2.10	71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91-1,	주식회사 하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30	사다리	133-10	전	727	727	양태관	들말홍한타운 110동 503호	들말흥한타운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축동면			750 75	750	양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7, 102동 3204호(잠원동, 아크 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										
31	사다리	133-11 전	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축동면				133-16 전		_1	71	71	73	73	74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91-1,	주식회사 하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	
32	사다리	133-16 전	133-16 전			1,025	1,025	양태관	들말흥한타운 110동 503호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축동면 사다리		.34 답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7, 102동	주식회사 하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33				585	585 585	양태관	3204호(잠원동, 아크 로리버뷰신반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34	축동면 사다리 축동면 사다리	·리 ¹³⁵⁻⁴ ·면 ₁₃₅₋₅	5-4 전 5,26	5.260	5,260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	주식회사 하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01				5,200	-,=00	0,200	1 2-4.1410.94	대동 33-121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35			135-5 전	135-5	135-5	i-5 전	135-5 전	전	3,188	3,188 3,188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 대동 33-121	주식회사 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축동면 사다리	207-1				77-1 대	07-1 대	대	대							_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7, 102동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36			207-1 대	207-1	207-1					6,184	4 6,184	양태관	잠원로 117, 102농 3204호(잠원동, 아크 로리버뷰신반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37	축동면 사다리					7 00) 00	Z 11 2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경상남도 진주시 상	주식회사 하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37					1046	1046		46 ナ	1046	89	89	주식회사대동정비	대동 33-121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 건축물조서 : 해당사항 없음

대 동 일 반 산 업 단 지 계 획 변 경 승 인 에 따 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내용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43-2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대동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유수지)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구 분		규 모	비고
	중로1 - 42	호선	· L=347m, B=20~26m	
도 로	중로2 - 53호선	기정	· L=247m, B=15m	
工工		변경	·L=51m, B=15m	
	소로1- 76	호선	· L=37m, B=10m	
주 차 장	장 노외주차장 30		• A=1,650 m ²	
공 원	소공원 45	기정	• A=1,560 m ²	
중 된		변경	• A=4,763 m²	
	완충녹지	53	• A=2,100 m ²	
	완충녹지	54	• A=890 m²	
녹 지	완충녹지	55	• A=2,270 m ²	
	완충녹지	56	• A=6,267 m²	
	완충녹지	57	• A=2,339 m²	
유 수 지 유수지 10		10	• A=1,810 m ²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가. 성 명 : (기정) (주)대동정비 대표이사 양태관

(변경) ㈜신흥 대표이사 강웅

나. 주 소 : (기정) 진주시 상대동 33-121번지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150 (상평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 정 : 2012. 09. 11. ~ 2024. 6. 30. └ 변 경 : 2012. 09. 11. ~ 2024.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 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와 동일함.

제877호

사천시 공고 제2024-280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 2. 29.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2024. 2. 29. ~ 2024. 3. 15.(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	성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명령일자	<u>гаеч чт</u>	
97모6748	봉고Ⅲ <mark>활어수송차</mark>	장*순	2024. 2. 20.	운전자(조키)가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고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고 차량검시를 받지 않아 운행정지를 신청함.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임.	

4. 공 고 내 용

-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77호

사천시 공고 제2024-290호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재위탁 시 원장의 연령을 고려하고, 학기 중 어린이집 운영자 변경 사례 예방 등 보육의 연속성을 유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기간: 3년 → 5년(안 제14조)
- 나.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는 사유 명시(안 제14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제87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84,

FAX: 831-6018)

^1 천 시 공 보

제877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제877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위원회"를 "사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 항) 중 "재 위탁"을 "재위탁"으로 한다.

-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운영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체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 2. 위탁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

제877호

- 3. 시설의 재건축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 또는 휴지가 예상되는 경우
- 4.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 경우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제2항 중 "재 위탁"을 "재위탁"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circ } 제3조(책임) ① (현행과 같음) 제3조(책임) ① (생 략) ②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 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의 위탁) ①・② (생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 ② (현행과 략)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공 (3) ----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위원회의 ----- 사천시 보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다)----제1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 | 제1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 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보육관 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의 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 운영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 위 린이집의 운영을 한 차례에 한정 탁할 수 있으며, 재 위탁 기간은 3 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탁만료 2 개월 전에 계약갱신 체결을 하여 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위탁 기간 은 5년으로 하되. 위탁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체결을 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

- ② 시장은 재 위탁 심의 시 해당 시설의 학부모 및 보육교사의 의 견을 반영할 수 있다.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 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조금지 원, 위탁의 해지, 재 위탁 여부 등 에 반영하고, 우수 국공립어린이집 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 다.
 - ③ (생략)
-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탁 기간 을 조정할 수 있다.

- 1.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 2. 위탁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
- 3. 시설의 재건축 등 국공립어린이 집의 폐지<u>또는 휴지가 예상되</u> 는 경우
- 4.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 경우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u>3</u>	 재위탁	 	

제17조(운영평가) ① (생 략) 제17조(운영평가) ① (현행과 같음)

(2)	
	재위탁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관 련 법 규》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 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개정 2022. 6. 2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 2. 위탁계약기간
-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77호

사천시 공고 제2024-296호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 ·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의 미개최 또는 실적저조 협의회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사천시 자치분권협의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협의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 임기 규정 삭제(안 제9조제3항)
- 나. 상설 협의회를 비상설 협의회로 전환(안 제9조제5항)
- 다. 협의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 위촉·제척·회의개최 규정 삭제 (안 제11조~제13조제1항)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제87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65,

FAX: 831-6021)

사 천 시 궁 보

제877호

.,,		
입 법 예 .	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	례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제877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 ·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의"를 "사천시의"로, "제고함"을 "높이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분권업무담당"을 "자치분권업무 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제목 외의 부분 중 "회의"를 "협의회의 회의"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시의</u> 자치분	제1조(목적) <u>사천시의</u>
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
<u>제고함</u> 을 목적으로 한다.	<u>는 것</u>
제3조(책무) <u>시장</u> 은 내실 있는 지방	제3조(책무) <u>사천시장(이하"시장"이</u>
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u>라 한다)</u>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	제9조(협의회 구성) ①
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	
0명 이내로 <u>구성하되, 위촉직 위원</u>	<u>구성한다</u> .
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	
<u>니하여야 한다</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u><삭 제></u>
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u>임기로 한다.</u>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4
간사ㆍ서기를 각 1명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u>분권업무담당</u> 팀장으로 한 다.

<신 설>

-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고, 위원회 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 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

----- <u>자치분권업무 담당</u> -----

-.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 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 다.

<삭 제>

<u><삭 제></u>

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 제13조(협의회 회의) <삭 제> 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 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협의회의 회의----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기반 강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지방자치법」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조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77호

사천시 공고 제2024-315호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제7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29.

사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2. 29. ~ 2024. 3. 14.(14일간)

2. 공고내용 :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 의견수렴

3.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도로명 부여·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별첨)

나. 열람장소 : 경상남도 사천시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4. 의견 제출방법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등으로 사천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 편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천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나. 전 화 : 055-831-2822 (FAX: 055-831-6929)

5. 도로명의 결정 절차

도로명(안) 마련	의견수렴 공고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고 시
도로구간 설정 및 예비도로명 부여	14일이상	30일이내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

【붙임】

도로명	병 부여 및 도	로구간 변	경에 대현	한 의견	결서	
성 명 및 기관·단체명		연	락 처			
주 소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신 청 예비도로명						
부여 사유 (변경사유)						
위와 같이 의	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	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히	<u>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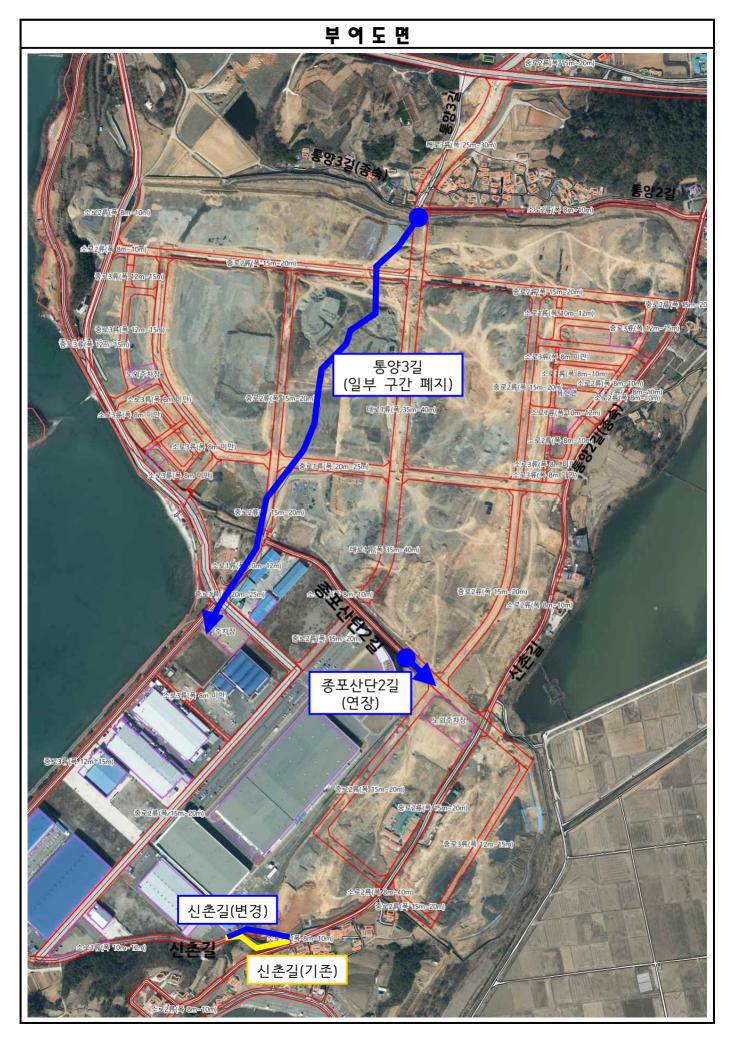
도로명 부여조서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7101()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초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 사유	관할구역	
언킨	에미포도정	시작지점	끝지점	道이(m)	ョ (m) → (m) ·	귀세	간격(m)	기조인모	포도정 구어 자유	선일구역
1	항공산단1로	신촌리 134	통양리 239-31	1000	26	로	20	1/100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 조성사업 도로개설	
2	항공산단2로	선진리 926-26	통양리 산3-14	1000	15	로	20	1/100		
3	항공산단3로	통양리 368-3	선진리 926-25	256	12	로	20	1/26		
4	항공산단4로	통양리 359-1	신촌리 91-1	1000	15	로	20	1/100		
5	항공산단5로	통양리 513-6	통양리 377	500	15	로	20	1/50		용현면
6	항공산단6로	신촌리 162-2	통양리 산10-1	1920	20	로	20	1/192		
7	통양4길	통양리 170-26	통양리 142-4	464	8	길	20	1/48		
8	항공산단1길	통양리 365-1	통양리 368-5	360	8.4	길	20	1/36		
9	항공산단2길	통양리 산 4-1	통양리 산9-18	570	10	길	20	1/58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7101(m)	위계	기계 기초	그 기초번호	비고	관할구역		
	에미포도당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m)	폭(m)	TI/11	기초 간격(m)	기오건오	n 17	현일구역
10	통양3길	통양리138-9	신촌리585-1	874	7.5	길	10	57/230	주도로 일부 구간 페지 (통양3길 57~230)	용현면
11	종포산단2길	신촌리161-5	신촌리62-2	70	8	길	20	37/46	주도로 연장 (종포산단2길 36~44)	용현면
12	신촌길	신촌리 382	신촌리 392-5	110	10	길	10	343/364	도로 선형 개선 (변경) (신촌길342~364)	용현면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	≟구 간	길이(m)	포 (***)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구간 변경사유	관할구역
	에미포도당	시작지점	끝지점	글이(m)	폭(m)	TIM	간격(m)	기오인오	포포ፐ한 한경작류	선일구역
13	반룡로	예수리 409	예수리 826-107	105	14	로	20	51/62	'사주천년교' 도로명 부여로 '반룡로' 주도로 연장	정동면



제877호

사천시 공고 제2024-319호

「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사천시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안전보안관의 정의(안 제2조)
- 나. 안전보안관의 위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다. 안전보안관의 활동,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라.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안 제8조)

제87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01,

FAX: 831-6036)

사 천 시 궁 보

제877호

입법예	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제877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사천시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을 위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등) ①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 2.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 3.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77호

- 제4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문화활동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정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사천시민의 안전의식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 3. 시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77호

-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3.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시행일부터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비용발생)요인

○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u>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u>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2024년도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비: 22,500천원
- 예상되는 연간 소요예산이 22,500천원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작성자: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관 련 법 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

- 적 ·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 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 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 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